의안번호	제 42 호
의 결	2022년 월 일
연월일	(제 회)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2년 9월 7일

#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42

제출연월일 : 2022. 9. 7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1. 제안이유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개별법령에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학원·교습소의 보험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

- O 독서실 내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정한 규정 위헌 판결[대법원 2022.1.27. 선고 2019두59851 판결]로 해당 조문 삭제
- O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을 정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학원보험 배상금을 1억에서 1억5천으로 상향(제2조제1항제1호)
- 나. 독서실 내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한 문구 삭제 (제2조의3 및 별표2)
- 다.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나.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관계법령: 별첨

##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"1억원"을 "1억5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56조제3항"을 "제56조제5항"으로, "비치하여야"를 "갖추어 두어야"로 한다. 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"학원에 있어서는"을 "학원의 경우에는"으로 한다. 제2조의3제3항 본문 중 "수용인원이 0.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,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"를 "수용인원은 0.8명 이하로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다만,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"을 "다만,"으로 한다. 제2조의4제2항 중 "2조의2제1항제1호"를 "제2조의2제1항제1호"로, "아니할"을 "않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"아니한"을 "않은"으로 한다.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절차, 기타 필요한"을 "절차에 관한"으로 한다. 별표 2의 제목 중 "실험・실습・실기등을 요하는"을 "실험・실습・실기 등이 필요한"으로 하고, 같은 표 독서실의 시설・설비 및 교구 기준란 (2)를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삭제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학원 설립・운영자 및 교습	제2조(학원 설립・운영자 및 교습
자 등의 책무) ① 「학원의 설	자 등의 책무) ①
립・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	
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	
4조제3항에 따라 학원·교습소	
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	
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	
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.	
1. 1인당 배상금액 <u>1억원</u> 이상	1 <u>1억5천만원</u>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	⑤
관한 법률」 <u>제56조제3항</u> 및 같	<u>제56조제5항</u>
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학	
원과 교습소 설립・운영자는 강	
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	
경력 조회를 하고 관련서류를	
비치하여야 한다.	<u> 갖추어 두어야</u>
제2조의2(학원시설) ① 학원은 교	제2조의2(학원시설) ①
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	
소에 설립하되, 그 목적을 실현	
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	
을 갖추어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실험·실습·실기 등이 필요	2

한 <u>학원에 있어서는</u> 이에 필 요한 시설·설비 및 교구 3. ~ 6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제2조의3(단위시설의 기준) ①・

- ② (생 략)
- ③ 열람실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,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.8명이하가 되도록 하고,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. 다만,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사용할 수 있다.
- ④ ~ ⑦ (생 략)

제2조의4(교습과정별 시설기준) ① (생 략)

- ② 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·실습·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.
- ③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·실습·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·설비 및 교구기준 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별표 2

<u>학원의 경우에는</u>
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3(단위시설의 기준) ①・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수용인원</u>
은 0.8명 이하로
<u>다만,</u>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4(교습과정별 시설기준)
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2조의2제1항제1호
<u> </u>
③

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 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 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.

제9조(행정처분) 법 제17조에 따 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 으며 행정처분의 대상, 기준, 절 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 칙으로 정한다.

1. ~ 3. (생략)

#### [별표 2]

실험 • 실습 •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

·설비 및 교구기준(제2조의4제3항 관련)

계열	교습과정	시설・설비 및 교구 기준	비고
예능	~ 기예 (식	탱 략)	
	63.독서실	9 17	

<u>야 스</u>	
제9조(행정처분)	
	<u>절</u>
차에 관한	
1 ~ 3 (혀해과 간은)	

3. (연맹과 싙금)

#### [별표 2]

실험・실습・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 설·설비 및 교구기준(제2조의4제3항 관련)

계열	교습과정	시설・설비 및 교구 기준	비고
예능 ~ 기예 (현행과 같음)			
독서실	63.독서실	가. 시 설 (1) 열람실: 시지역 60m²이상, 군지 역 50m²이상 나. 설 비 (1) 열람대 일시수용능력 1명당 1대 다. 그 밖에 필요한 시설・설비 및 교구	

## 관계 법 령

### 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]

제4조(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) ③ 학원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 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·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·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 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0.> 제8조(시설기준)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제76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)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·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<본조신설 2020. 6. 9.>

### 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]

제84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)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"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.

- 1. 사망의 경우: 1억 5천만원 이상
- 2. 부상의 경우: 3천만원 이상
- 3.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: 1억 5천만원 이상 <본조신설 2021. 6. 10.>

### [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 · 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(고시) 별표]

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(제2조 1호 관련)

"재난안전의무보험"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.

- 1. ~ 40. 생략
- 41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- 42. ~ 46. 생략 <행정안전부고시 제2021-95호, 2021. 6. 15. 제정>

# 「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: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「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는 대법원 판결 및 관련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 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

4. 작성자: 행정국 재무과장 한명수